

사회봉사활동 운영 규정

제정 2012. 05. 01 개정 2013. 02. 28
 개정 2014. 03. 31 개정 2017. 05. 01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06. 25
 개정 2019. 08.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37조에 의거하여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사회봉사활동의 운영과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과 개설의 목적) 사회에 대한 순수한 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하는 태도와 사랑의 정을 나누는 인도주의적 의식을 함양하여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인 충효인경(忠孝仁敬)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개정 2017. 5. 1)

제3조 (사회봉사활동의 범위) 사회봉사활동은 보수적 대가나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회 복지 및 공익활동 전반에 걸쳐 육체적 활동 및 전문적 기술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활동분야는 교외활동과 교내 활동으로 구분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교외 사회봉사활동

1. 장애인 돕기(재활원 등)
2.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이웃 돕기(단순 기부행위 제외)
3. 고아원, 양로원, 기타 공인 사회복지기관 봉사
4. 농어촌 봉사활동
5. 재난복구 참여
6. 교육봉사 및 공익 캠페인 활동
7. 교통질서 계도, 방범활동
8. 환경·자연 보호(쓰레기 수거, 산불예방, 나무심기, 수질보호, 공해 방지 등)
9. 전문기술 지원에 관한 봉사
10. 헌혈(증서 1매당 4시간 인정, 매수에 제한 없음) (개정 2017. 5. 1)
11.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활동

② 교내 사회봉사활동 : 교내 사회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대외적인 업무나 행사에 금전적인 보상이 없이 봉사한 활동을 의미하며, 한 학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단, 외국유학생 및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최대 3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교내 사회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

1. 입학식, 졸업식 및 대외 행사 지원활동
2. 대외홍보 및 전형 지원활동
3. 멘토링, 교내외 환경 정화 활동 및 계도 활동
4.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활동 (개정 2017. 5. 1)

제4조 (이수) ① 사회봉사활동은 교양필수교과로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은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7. 5. 1)

단,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봉사활동 수행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며, 사회공헌센터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6)

② 사회봉사활동은 1학년 1학기부터 실시하며, 성적 평가 및 학점은 2학년 2학기에 부여한다. (개정 2017. 5. 1)

③ 사회봉사활동 학점 신청(재수강 포함)은 학칙 제27조에 의거한 매학기당 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주관부서) 사회봉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계획수립 및 운영은 사회공헌센터가 주관하며, 평가 및 개별지도는 학과별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개정 2013. 3. 1, 2014. 3. 31, 2017. 5. 1)

제6조 (학점이수방법) ① 사회봉사활동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2학년 2학기에 신청하며, 사회봉사활동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과 인성교육, 사회봉사활동 소감문,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7. 5. 1, 개정 2018. 6. 25)

② 사전교육은 학과(부)별 개설된 Counselling & Study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 3. 1, 2014. 3. 31, 2017. 5. 1)

단, Counselling & Study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학과인 경우, 학과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③ 인성교육은 대학 및 부설기관, 사회공헌센터, 학과(부)가 주관하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인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7. 5. 1)

④ 사회봉사활동 소감문(10점 만점)은 학사종합시스템에 접속 후 400자 이상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1)

⑤ 사회봉사활동은 대학에서 단체로 추진하는 사회봉사활동과 동아리나 개인별로 실시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모두 포함하되, 대학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발행한 봉사활동확인(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그러므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을 한 기관의 장 또는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부서)의 장이 발행한 사회봉사 활동내용을 학사종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사회봉사활동 확인(증명)서(별지 제22-1호 서식 참조; 봉사활동내역, 시간수 반드시 기재)를 학사종합시스템에 첨부(스캔본 등)하여야 한다. 단, 대학에서 인증한 기관이 아닌 경우, 사회공헌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5. 1, 2017. 12. 26)

제7조 (평가) 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2학년 2학기에 학과별 사회봉사활동 교과담당교수가 학사종합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5. 1, 2017. 12. 26)

②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③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사전교육 1회(필수과정 P/N), 인성교육 1회(필수과정 P/N), 기본봉사활동시간(30시간, 70점), 초과봉사활동시간(1시간 당 1점, 0점 ~20점), 소감문(0점 ~10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회봉사활동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한다. 단, 지도교수는 공인된 사회봉사활동 인증기관(1365 자원봉사포털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발행한 봉사활동확인(증명)서에 한하여 확인을 한 후 1일 8시간을 초과한 봉사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17. 5. 1, 2017. 12. 26, 단서신설 2019. 8. 26)

1. 재학 중 징계로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아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5. 1)

④ 기본활동시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이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봉사를 거부당하거나 시정대상으로 통보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⑤ 2학년까지 사회봉사활동 학점 취득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F로 처리된다.

⑥ 총 사회봉사활동 시간의 인정은 개별 사회봉사활동 시간의 합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9. 8. 26)

⑦ 제6항의 개별 사회봉사활동 시간평가는 1시간(60분) 단위로 평가하되, 60분이 안되는 분 단위는 1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불인정하여 평가한다. 개별 사회봉사활동 시간평가에서 60분이 안되는 분 단위는 1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불인정하여 평가한다. (신설 2019. 8. 26)

제8조 (재수강) ① 사회봉사활동 학점이 B+ 이하인 학생은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② 재수강을 신청한 학생은 사전교육과 이전에 수행한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유지되며, 인성교육과 소감문은 무효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삭제된다. (개정 2017. 5. 1)

③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 2학년 지도교수가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한다. 단 4학년 하계 졸업예정자인 경우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회공헌센터장이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한다. (개정 2013. 3. 1, 2014. 3. 31)

제9조(유급) 유급을 신청한 학생은 유급 이전에 수행한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유지되며, 사전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소감문은 무효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삭제된다. (신설 2017. 5. 1)

제10조(지도교수의 역할) 1학년 및 2학년 지도교수는 사회봉사활동 교과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교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① Counselling & Study 시간을 통하여 사회봉사활동의 목적과 학점취득방법을 교육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관련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토록 지도한다. (개정 2017. 5. 1)

② 학생들이 입력한 사회봉사활동의 내용과 사회봉사활동 확인(증명)서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확인' 란을 클릭하여 사회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 5. 1)

③ 2학년 지도교수는 수강 신청된 학생들의 소감문 성적 입력 및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교과에 대한 평가 후 학사종합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평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5. 1)

제11조 (사회봉사활동 행정) 사회봉사활동의 대외협력, 행정 관리와 시행의 엄정성은 사회공헌센터가 관장한다. (개정 2013. 3. 1, 2014. 3. 31, 2017. 5. 1)

제12조 (세칙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사회공헌센터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2019. 8. 26)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2012학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